

실측설계 평가기준(제26조제3항 관련)

1.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세부 평가항목	배점
1. 기본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</li> <li>○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부재의 교체, 대체, 보강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</li> </ul>	20
2. 실측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부재 가공기법,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평면·입면·단면·천정·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</li> </ul>	25
3. 내역산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공사비 산출(견적) 내용의 적정 여부</li> </ul>	20
4. 도서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</li> <li>○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·날인 여부</li> <li>○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</li> </ul>	25
5. 그 밖의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</li> <li>○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</li> <li>○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</li> </ul>	10

2. 가감점 부여기준

적 용 기 준	배점	소급기간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.	- 2.5점	3년
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.	+1점	3년

비고

1. 실측설계의 평가 시 평가등급은 우수(점수로는 배점×1), 양호(점수로는 배점×0.9),

보통(점수로는 배점×0.8), 불량(점수로는 배점×0.6)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.

2. 발주자는 용역의 특성상 부득이 위 세부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.
3. 실측설계 중 정밀실측조사 등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역산출에 대한 평가 배점 20점을 실측조사와 도서작성에 각각 10점씩 배분하여 평가한다.